

이 보도자료는 2021. 6. 3.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전화 031-5182-4253

보도자료
2021. 6. 3.(목)

제 목

2세 입양아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3호 내지 제7호의 공개금지정보
- ※ 2021. 5. 31.(월)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2세 여아('18. 8.생)를 폭행해 오다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면서 방치한 양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해자 얼굴의 선명한 멍자국, CT, MRI,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뺨을 강하게 맞아 갑작스러운 머리회전 및 흔들림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위중한 상황임에도 7시간 방치 후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여 이미 뇌 상당부분이 손상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연명치료중임
- 수원지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피해자의 회복정도를 고려하여 파양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 피고인 및 피해자

- 피고인 A(남, 36세, 양부, 회사원)
- 피고인 B(여, 35세, 양모, 가정주부)
- 피해자 C(여, '18. 8.생, 2세) ※ '20. 8. 14. 친양자로 입양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 '21. 4. 중순 ~ 5. 초순경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굣이(47센티미터, 나무재질)와 구둣주걱(길이 53센티미터, 나무재질)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려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1. 5. 6. 22:00경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 11:00경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뜨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피고인 B

-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피고인 A, B

- '21. 5. 8. 11:00경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쳐져 있어 응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17:10경까지 7시간 방치하여 의료적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3 주요 수사 경과

- 5. 8. 18:52 안산 단원병원 응급실 의사 112신고(아동학대 의심)
※ 얼굴 부위 멍 자국 확인하고 신고 후 가천대길병원으로 전원
- 5. 9. 00:09 경찰, 피의자 A 긴급체포
- 5. 11. 피의자 A 구속, 피의자 B 입건 후 조사
검경 합동수사회의 -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보완수사 협의
- 5. 17. 사건송치
- 5. 25.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개최
- 5. 17. ~ 6. 2. 송치 후 보완수사
 - 피의자들 3회 조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신경외과 전문의 등 3명 서면조사, 법의학 전문의 자문 조회, 진료내역 확보
- 6. 3. A 구속기소, B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1 중상해의 원인

- 피해자 얼굴의 선명한 멍 자국, CT 및 MRI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법의학 교수 감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연결정맥(bridging vein, 정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정맥) 손상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갑작스러운 머리 회전 및 흔들림으로 뇌출혈이 발생”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5. 8. 거실에 있는 30cm 높이의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일 현장에 있던 다른 자녀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는 아이는 이동할 때 몸의 뒤척임이 있으나,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아이는 ‘축 처지는 증세’로 자는 아이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

- 피해자는 7시간 경과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측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반혼수상태(Semi-coma)로, 당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혼수상태(Coma)에서 연명치료중임

※ 반혼수상태(semi-coma)는 외부 자극에 반응이 있으나 혼수상태(coma)는 외부 자극에 반응조차 전혀 없는 상태임

2 범행 동기

- 피고인들은 4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9. 5.경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10개월)를 알게 되어 '20. 8. 14. 피해자를 입양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언어습득이 늦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구똥주걱으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다 점점 학대 수위가 높아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세게 때려 본 건에 이른 것임

5 참고사항

1 피해자 지원 등

- 송치 직후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해자를 대리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아동보육과,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법률지원 방안 논의함
- 학대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현재도 혼수상태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임

2 파양 청구여부

- 양부모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파양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므로, 향후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파양 청구여부 결정 예정임 ☒